

과업지시서

1. 공사 개요

가. 건 명	남이섬 직장어린이집 시설개보수 공사
나. 발주처	주식회사남이섬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착공·준공일자는 계약 체결 시 확정)
라. 공사장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변로 1007-34 (남이섬어린이집)
마. 공사규모	지상 2층, 연면적 770.14㎡ 중 실내 인테리어 개보수 구간
바. 공사범위	품목별 수량·규격 등 상세 내역은 별첨 «공사비 산출내역서(설계견적서)» 참조. 주요 공정은 다음과 같음. ① 가설·철거공사 : 강관비계 설치, 천정 누수부위 석고 철거, 기존 도배·도장 면·인조잔디 철거 등 ② 도배공사 : 보육실 등 벽면 재도배 ③ 방수공사 : 옥상 놀이터 방수(기존 우레탄 철거 후 폴리우레아 방수 재시공) ④ 도장공사 : 복도·벽체 크랙 보수 및 수성도장 ⑤ 필름공사 : 복도 창호 자외선방지 필름 부착 ⑥ 창호(출입문)공사 : 보육실·화장실·통로 등 출입문 및 도어행거레일 교체 ⑦ 수장·매트·부대·설비공사 : 강화마루, 교구장 보수, 트렌치 보수, 냉난방 배관 점검, 실리콘 재시공 등 ⑧ 폐기물처리 : 공사 중 발생한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2. 시공기준 및 품질관리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집 시설기준·안전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사용 자재는 최신·최상의 규격품으로 하며, 영유아 시설의 특성상 친환경(저VOC·무독성) 자재를 우선 선정하고 사전에 발주처의 협의·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설계도서·물량내역서·시방서 내용 중 불분명한 사항은 임의로 해석하지 말고 사전에 경영지원팀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시공업체에 있다.

라. 설계자료에 누락·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입찰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수급자 비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도어·창호 등 조립·설치를 요하는 품목은 완제품 상태로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검사가 필요한 항목은 관련 법령에 따른 합격증을 준공 전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운영 및 안전관리

가. 공사기간 중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365일 운영시설)됨을 전제로, 시공업체는 영유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계획을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나.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은 원아 등원 전·후 또는 휴원 시간대로 조정하며, 작업구간은 영유아 접근이 차단되도록 안전펜스·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산업재해 및 근로자재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시공업체에 있다.

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4대 사회보험료 등은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가 정한 바에 따라 반영·정산한다.

마.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및 비상통로는 공사기간 중에도 상시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

가.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고, 처리 증빙(폐기물 처리확인서 등)을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 종료 시마다 현장 정리·청소를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검사 및 준공

가. 시공업체는 공정별 주요 시점(철거완료, 방수·도장 완료, 창호 설치 완료 등)에 발주처(경영지원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준공 시 준공도면, 준공사진, 정산서류, 하자이행보증보험증서(또는 하자보수보증금), 폐기물처리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검사·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검수 결과 하자 또는 설계기준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발주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재시공·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라. 준공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지원금 정산·사후관리(현장 점검 등)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6. 하자보수

가.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하자이행보증율은 총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권으로 제출한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견될 경우 시공업체는 발주처가 정하는 기한 내에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 계약의 해지 및 변경

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시정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설계서·규격서상 의무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는 공기 지연, 품질미달·규격상이 등 하자로 준공 달성이 곤란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 권리·의무를 양도, 전매, 전대, 담보 제공하는 경우

나.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서면으로 확인한 후 시공한다.

8. 대금지급 및 지체상금

가. 대가의 지급은 발주사의 대금 지불조건에 따르며, 기성금은 공사 진행율에 따라 지급한다.

나. 지체상금율은 지연일당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관계 법령 및 발주처·시공업체 간 협의에 따른다.

나.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과장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 본 공사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등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및 비용에 관한 책임은 해당 시공업체에 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주식회사남이섬 경영기획부문 이정은(031-580-8122 / na299@naminara.com)에게 문의한다.